**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이하 “데이터가공사업자”라 한다)가 대상데이터의 가공서비스를 완성하고, □□□(이하 “데이터이용자”라 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당사자들 간의 권리･의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대상데이터”는 본 계약에 따라 데이터이용자가 데이터가공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로서, [별지1]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

3. “가공데이터”는 대상데이터에 대한 가공서비스 수행을 통하여 생성된 일체의 결과물을 말한다.

4. “가공”은 데이터의 생성, 편집, 정정(訂正), 결합, 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5. “가공서비스”는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행위(기획, 컨설팅, 정보제공, 데이터의 수집 등)를 말한다.

6.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명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다목, “민감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서 각각 규정한 것을 말한다.

7. “제공”이란 데이터의 이용을 위하여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8. “데이터가공사업자”란 본 계약을 통하여 대상데이터에 대한 가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9. “데이터이용자”란 본 계약을 통하여 데이터가공사업자로부터 대상데이터에 대한 가공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계약의 이행 및 준수)**

①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각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 및 이행에 있어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_\_\_\_\_\_\_\_\_까지([ ]개월)로 한다.

**제5조(가공서비스의 범위)**

① 데이터가공사업자는 [별지2]에서 기재한 목적을 위하여만 대상데이터에 대한 가공서비스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가공사업자는 가공서비스와 관련하여 데이터이용자의 서면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사항에 따라서만 가공서비스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 요구사항은 [별지2]에서 기재한 바와 같다.

④ 데이터가공사업자는 데이터이용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가공서비스 중 아래 사항은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  |  |
| --- | --- |
| 재위탁 제한 범위 | -  -  - |

**제6조(가공서비스를 위한 개발협의)**

① 데이터가공사업자는 본 계약체결 후 [ ]주 이내에 데이터이용자와 협의하여 대상데이터에 대한 가공서비스를 위한 수행일정, 수행인력, 수급사무의 범위와 수준 등을 명시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최종본은 데이터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대방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본문의 요구에 따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정한다.

**제7조(가공데이터의 제공기한)**

① 데이터가공사업자는 [별지3]에 기재한 대로 데이터이용자에게 가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3]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② 데이터가공사업자가 제1항의 가공데이터 제공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데이터가공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제공기한까지 가공데이터의 제공을 지체한 경우 그 지체일수에 제10조에서 정한 해당 대가의 [ ]분의 [ ]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지체상금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데이터가공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데이터이용자는 제2항에 따라 제공기한 연장에 동의한 경우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 제3항의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가공데이터에 대한 검수 등)**

① 데이터이용자는 가공데이터 전부를 제공받기 전에 제7조 제1항에 따라 가공데이터의 일부를 순차적으로 제공받는 경우 그 제공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검수 후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가공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공데이터를 완성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가공사업자는 본 계약조건에 따라 가공데이터를 완성한 때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데이터이용자는 그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검수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이용자는 제3항의 통지를 받은 후 [ ]일 이내에 가공데이터에 대한 검수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만일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통지 없이 [ ]일이 경과한 날에 검수결과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없다는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⑤ 데이터이용자는 제4항의 검수결과 가공데이터의 하자 등 본 계약조건에 따라 가공데이터를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통지한 경우, 데이터가공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⑥ 데이터이용자는 제4항 또는 제5항의 통지를 하는 경우 가공데이터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⑦ 데이터가공사업자가 제5항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을 완료한 경우 제3항 내지 제6항, 제8항을 준용한다.

⑧ 데이터이용자는 가공데이터에 대한 검수결과 본 계약조건에 따라 제작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데이터가공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검수결과에 대한 이의)**

① 데이터가공사업자는 제8조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데이터이용자의 통지(예: 가공서비스가 본 계약조건 대로 수행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들은 상호 합의로 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하는 제3의 검수기관에게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결하기로 한다. 이 경우 검수기관에 대한 의뢰비용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50:50으로 분담한다.

**제10조(대가지급)**

①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가공사업자에게 가공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금 \_\_\_\_\_\_\_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이용대가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한은 다음 중 적절한 방식으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지급기한에 대하여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는 제8조 제8항의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 ]일 내로 지급한다.

|  |  |  |
| --- | --- | --- |
| **지급방법 및 지급금액(부가가치세 별도)** | | **지급기한** |
| ▢ 일시금 지급 | 제1항의 이용대가 전액 | \_\_\_\_\_\_\_\_\_\_\_\_\_\_\_\_\_\_ |
| ▢ 분할금 지급 | 1차: \_\_\_\_\_\_\_\_\_\_\_\_\_\_원 | 1차: \_\_\_\_\_\_\_\_\_\_\_\_\_\_\_ |
| 2차: \_\_\_\_\_\_\_\_\_\_\_\_\_\_원 | 2차: \_\_\_\_\_\_\_\_\_\_\_\_\_\_\_ |
| 3차: \_\_\_\_\_\_\_\_\_\_\_\_\_\_원 | 3차: \_\_\_\_\_\_\_\_\_\_\_\_\_\_\_ |
| ▢ 정기금 지급 | \_\_\_\_\_\_\_\_\_\_\_\_\_\_원 | ▢ [ ]월  ▢ [ ]년 |
| ▢ 기타 방법 |  |  |
| (☞ 해당되는 부분에 ■ 표시) | | |

③ 데이터이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대가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연 [ ]%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가공서비스의 내용 등 변경)**

① 데이터가공사업자 또는 데이터이용자는 본 계약체결 후 가공서비스의 내용 또는 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상대방은 제1항에 따라 동의하는 경우 계약기간 또는 대가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상대방은 제2항에 따라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적어 제1항에 따라 변경을 요구하는 당사자에게 미리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또는 대가의 변경 사유와 기준

2. 변경기간 또는 변경금액

3. 그 밖에 변경을 정당화할 수 있는 자료

**제12조(대상데이터의 범위)**

가공서비스를 위한 대상데이터의 범위는 [별지1]과 같다.

**제13조(대상데이터의 제공방법)**

① 데이터이용자가 데이터가공사업자에게 대상데이터를 제공하는 방법 및 기한 등은 [별지1]에서 정하며, [별지1]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들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② 각 당사자가 제1항의 방법, 기한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4조(대상데이터의 이용허락 범위)**

① 데이터가공사업자는 다음의 목적으로만 대상데이터를 이용하여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데이터가공사업자는 데이터이용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대상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본 조의 이용허락에도 불구하고 대상데이터에 관한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데이터가공사업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제15조(가공데이터의 이용권리)**

① 가공데이터를 이용할 권리는 데이터이용자에게 귀속한다.

② 데이터가공사업자가 대상데이터를 가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발명, 창작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은 데이터가공사업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본문의 지식재산권(「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다)은 데이터이용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제16조(대상데이터의 관리의무 등)**

① 데이터가공사업자는 대상데이터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다른 데이터와 명확히 구별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하며, 데이터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대상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이용자는 대상데이터의 관리상황에 대하여 데이터가공사업자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를 요구하거나 대상데이터의 관리･보관 방법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데이터가공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데이터이용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대상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데이터가공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조치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대상데이터의 유출 시 조치)**

① 데이터가공사업자는 대상데이터의 유출･분실･도난 또는 훼손 등(이하 “유출등”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 즉시 데이터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가공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대상데이터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 제1항 외에도 지체 없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유출의 범위를 확인하고 원인 및 재발방지방안을 수립하여 이를 데이터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가공사업자는 대상데이터 유출등으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 ]일간의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각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최고 없이 즉시 서면에 의한 통지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은 제외) 등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파산, 화의, 정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거나 스스로 그러한 신청을 한 경우

5.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처분하는 경우

6. 데이터가공사업자가 타사와 합병, 인수되는 경우

7. 불가항력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③ 본 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이미 발생한 권리관계 및 각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는 상대방이 해제권자 또는 해지권자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⑤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9조(손해배상)**

① 각 당사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3자가 대상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권리 주장, 이의제기 또는 소제기 등을 하는 경우, 데이터이용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데이터이용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책임의 제한 등)**

① 데이터가공사업자가 대상데이터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기타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인하여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데이터이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이용자는 제1항의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된 데이터가공사업자에 대한 모든 청구, 손실,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데이터이용자는 해당 분쟁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최대한 협조한다.

③ 제1항의 분쟁으로 인하여 데이터이용자가 일체의 청구를 당하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 데이터가공사업자는 이를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상대방이 입은 일체의 손해, 손실, 비용 및 지출(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불가항력)**

① 각 당사자는 지진, 태풍, 홍수, 수해, 대규모 화재 등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 전쟁, 기타 예측이 불가능하고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원인(이하 “불가항력”이라 한다)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각 당사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계약 종료 후 조치)**

① 데이터가공사업자는 본 계약 종료 후 대상데이터 및 가공데이터(이하 통칭하여 “반환데이터”라 한다)의 이용을 즉시 중단하고 본 계약종료일로부터 [ ]일 이내에 [별지4]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가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데이터를 폐기한 경우 그 폐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예: 폐기 확인서 등)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가공사업자는 본인이 보유한 모든 데이터 내에 반환데이터에 접속이 가능한 링크 또는 접속정보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가공사업자는 제16조 제2항에 따라 데이터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반환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한 경우 본인의 책임으로 제3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준하여 반환데이터의 이용중단, 반환, 폐기(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받아 데이터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포함), 접속링크나 접속정보 제거 등을 하여야 한다.

**제23조(하자보증)**

① 데이터가공사업자의 가공데이터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본 계약기간의 종료일로부터 [ ]개월로 한다.

② 데이터이용자는 제1항의 하자보수 기간 내에 데이터가공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가공데이터에 대한 하자 및 이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데이터가공사업자는 그 청구를 수령한 후 [ ]시간 내에 하자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가공사업자에게 가공데이터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다.

1. 데이터이용자가 제공한 대상데이터로 인하여 가공데이터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2. 데이터이용자가 제공한 가공서비스에 대한 서면 요구서[별지2]에 따라 가공서비스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가공데이터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데이터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가공데이터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④ 데이터가공사업자가 제2조 제2호의 대상데이터 또는 제5조 제3항의 서면 요구서의 각 하자를 사전에 알고도 데이터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공사업자가 하자보수 책임을 부담한다.

**제24조(비밀유지의무)**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서면･구두 또는 기타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밀정보임을 표명 또는 표시한 후 서류, 자료 등 일체의 정보를 공개한 경우 상대방은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누설하거나 비밀정보를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판결,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행정청의 처분, 명령 또는 관련 법령의 공개의무에 따라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비밀정보 공개 시점에 이미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비밀정보에 의하지 않고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공개 시점에 알려진 정보

4. 비밀정보 공개 후에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된 정보

5.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비밀유지의무 없이 공개된 정보

④ 공개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자신의 임직원 또는 법률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신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에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25조(효력유지조항)**

본 계약이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제 또는 해지에 따라 종료한 경우이더라도,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은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 ]년간 유효하게 존속한다.

**제26조(완전합의)**

① 본 계약서는 본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루어진 당사자 간의 모든 합의 및 의사표시를 대체하며, 기존의 모든 합의 및 의사표시는 본 계약의 체결로 효력을 상실한다.

② 본 계약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만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은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7조(일부 무효)**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무효 또는 이행불능으로 인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실은 본 계약의 다른 조항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

**제28조(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통지)**

본 계약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통지 등은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로 우편, 전자문서 등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의 원인에 따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4조의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저작권법」, 「발명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③ 각 당사자는 제2항의 분쟁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피고의 본점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31조(준거법)**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제32조(특약사항)**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당사자들은 상기 모든 조항을 확인한 후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데이터가공사업자와 데이터이용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데이터가공사업자:**

상호:

주소:

대표자: (인)

**데이터이용자:**

상호:

주소:

대표자: (인)

첨부: 별지

**[별지1] 대상데이터**

1. 대상데이터 및 그 이용범위

|  |  |  |  |
| --- | --- | --- | --- |
| **구분** | **데이터 이름** | **데이터 항목 등** | **데이터가공사업자의 이용범위** |
| 1 | ○○○ | 【데이터 건수, 용량, 파일형식 (확장자), 데이터 상세설명 등 데이터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이용허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
| 2 | ○○○ |  |  |

2. 대상데이터의 제공기한 및 제공방법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데이터 이름** | **데이터 항목 등** | **제공방법** | **파일형식** | **제공기한** |
| 1 | ○○○ | 【데이터 건수, 용량,  파일형식(확장자), 데이터 상세설명 등 데이터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전자우편, 저장장치 전달, API 연동, 시스템･서비스 접속 방식으로 전달 등 데이터 제공방법】 | 【TXT, JSON, CSV, XLSX 등 데이터 제공 파일 형식】 | 【○년○월○일】 |
| 2 | ○○○ |  |  |  |  |

**[별지2] 데이터이용자의 서면 요구사항**

|  |
| --- |
| ※ 본 계약에서 데이터이용자의 데이터가공사업자에 대한 서면 요구사항은 가공 및 가공서비스의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가능한 한 자세하게 기재함 |

1. 가공서비스 위탁목적

2. 데이터이용자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별지3] 가공데이터 제공기한 및 제공방법**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데이터 이름** | **데이터 항목 등** | **제공방법** | **파일형식** | **제공기한** |
| 1 | ○○○ | 【데이터 건수, 용량,  파일형식(확장자), 데이터 상세설명 등 데이터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전자우편, 저장장치 전달, API 연동, 시스템･서비스 접속 방식으로 전달 등 데이터 제공방법】 | 【TXT, JSON, CSV, XLSX 등 데이터 제공 파일 형식】 | 【○년○월○일】 |
| 2 | ○○○ |  |  |  |  |

**[별지4] 계약종료 시에 반환, 폐기 또는 삭제되는 데이터**

|  |  |  |  |
| --- | --- | --- | --- |
| **구분** | **대상데이터/가공데이터 이름** | **데이터 항목 등** | **생성기간** |
| 1 | ○○○ | ○○  【별지 1 또는 2를 인용하여 특정】 | 【○년○월○일~○년○월 ○일】의 기간에 생성된 것 |
| 2 | ○○○ |  |  |

\* 가공데이터는 생성기간을 기재함